

용인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

제정 2002. 4. 1 조례 제387호
개정 2004. 2. 27 조례 제506호
2005. 10. 5 조례 제775호
폐지 2007. 12. 31 조례 제921호(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)

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제정 2007. 12. 31 조례 제921호

본문 생략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」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, 용인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이 생략

